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의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설명문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

- 상품명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 계약자 : ○ 피보험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 보험가입금액 : ₩ ○ 보험료 : ₩
- 보험기간 : ~ ○ 분납기간 : 해당사항없음
- 보증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 모집종사자 : 서울보증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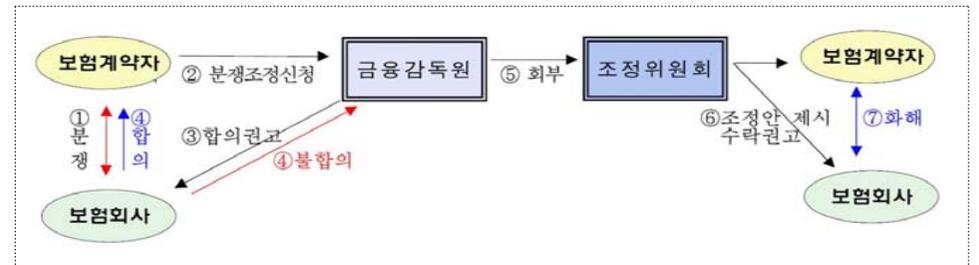
※ 모집종사자의 권한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서면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행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 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약관 및 약정서 등 중요 내용

-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계약자인 귀하께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 받은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귀하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단체 또는 개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및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등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규정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때 청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 등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및 해지) 회사는 귀하의 보증보험계약 청약에 대해 보험계약심사를 통해서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회사와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 및 손실보상) 회사는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상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때 발생하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에 따라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보험료의 환급) 회사는 귀하께서 보험사고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은 때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사전구상)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 또는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거나, 기타 귀하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나빠졌을 경우에는 담보물로 선충당하거나, 채권보전을 위하여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 모집자(연락처 :)와 우리 회사(연락처 : 02-3671-7000)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보험계약승낙절차) 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심사가 즉시 이루어지는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보험계약심사에 상당 기간이 요구되는 계약은 심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다만, 심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확인] 위의 보증보험계약 관련 중요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보험계약자인 본인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보통약관을 승인하며, 아래 기재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청약합니다.

증 권 번 호			
보 험 약 내 용	보 험 가 입 금 액	피 보 험 자	
	보 험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간)	
	보 증 내 용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보 험 료
주 계 약 내 용	주 계 약 명		
	대 여 금 액	상 환 방 법	
	계 약 기 간	부터 까지	
	자 금 의 용 도	이 자 율	
	계 약 일 자	대 출 유 형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회사와 상기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은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채무 또는 의무의 성실히 이행) 본인은 보증보험계약 및 그 변경(보험가입금액의 증액,감액, 보험기간의 연장,단축, 기타사항의 변경) 계약에 따라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합니다.

제2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본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본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구상채권,대위채권 등의 보전(해지포함)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2.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3.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제3조(사전구상) ①본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없이 본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행사 전에 미리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2.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이상 관련된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
 3.과산,회생(개인회생 포함)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납기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의 작수가 있는 때
 5.영업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
 6.회사와 본인 사이에 체결된 다른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7.제4호 이외의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납기전 납부고지 포함)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회사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8.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②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본인의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존재할 경우, 회사는 그 담보를 환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을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손실을 전액 충당하기 부족하거나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담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전구상권을 행사(사전구상권에 의한 상환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 본인은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443조에서 정하는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④본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주계약의 목적물을 회사가 보관·관리 또는 운영하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제4조(담보) ①본인의 신용약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본인은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교체 또는 추가제공하거나 보증인을 교체 또는 추가로 세우야 합니다.
 ②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정절차에 따라 처분합니다. 다만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가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기로 한 때에는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5조(위험부담·면책조항) ①본인은 회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이하 "증서 등"이라 합니다)가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에 회사의 장부,전표 또는 전산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회사가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본인이 회사에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증서 등의 기재문면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6조(관할법원의 합의)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_____지점(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다만,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교부 생략 요청 및 동의》

본인이 귀사에 청약하는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와 피보험자간 상호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귀사가 증권발급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본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증권제출의무를 대신하는 경우, 당해 증권의 교부를 생략하는데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보증보험계약(변경,정정계약 포함)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귀중

주 소	() -	휴대폰(Mobile)	() -
자택전화	() -	E-mail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인 또는 서명)

결 제	담 당	차 장	부 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

서울보증보험(주) 귀중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체결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유지·이행·관리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신용 관련 통계모형 개발 및 분석
 - 기타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상담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직업,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 내용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공공기록,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당해 보험계약효력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다만, 보험계약 종료일 후에는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당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사은 판촉 행사 등의 안내
 - 당사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연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외에 보증보험 약정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다만,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할인쿠폰 제공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보증계약자 : (인 또는 서명)

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직업,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정보 등과 이에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공공정보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 조회의 목적
 - 보험계약체결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신용 관련 통계모형 개발 및 분석, 기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상담 등
-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보험계약효력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이며 다만, 본인이 신청한 계약이 귀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나 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 미체결 시 그 시점까지, 기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상담 시 상담 종료시점까지 유효합니다.
- 조회자(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보증계약자 : (인 또는 서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귀사가 이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본인 및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판단,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사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신용 관련 모형개발 및 분석을 위한 자료 활용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메일 등
 - 신용거래정보 : 보증(신용)보험 계약체결현황 및 채무보증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코리안리재보험(주) 등 국내외 재보험사
 -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
 - 채권추심업체 : 에스지신용정보(주)
 - 우편물 및 자료용지 발송업체 : (주)알파전산품, (주)한영시스템 등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또는 유지·이행·관리, 보험사고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공받은 업무의 수행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제공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 (1), (2)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당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사은 판촉 행사 등의 안내
 - 당사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연구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메일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할인쿠폰 제공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 또는 서명)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 또는 서명)